

## 명예교원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교육법 제7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교수의 자격, 추대절차, 복무, 기타 명예교수의 추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자격)**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본교에서 20년 이상 전임교원(총장 재직 포함)으로 재직하고 정년 또는 기타 사유로 퇴직한 자로서 재직당시 교육 및 학술 면에서 공적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. (2018.8.24.개정)

**제3조(추대 절차)** 명예교수의 추대는 다음의 절차를 밟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① 소속학과 교수회의 3분의2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추천한다. (2018.8.24.개정)

② (삭제) (2018.8.24.개정)

③ (삭제) (2018.8.24.개정)

④ (삭제) (2018.8.24.개정)

⑤ 명예교수 추대를 제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명예교수 추대에 대한 의견서
2. 교육 및 활동 공적서

**제4조(복무)**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총장은 명예교수가 전문분야에 관하여 연구 활동 등에 참여하게 하거나 특별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.

**제5조(처우)** 명예교수는 총장이 필요에 따라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. (2012.2.16.개정)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